

의안번호	2207693
의 퇴 인	박희승의원
회 답 일	2025.02.27.
추계번호	24C64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서류송달 방식 변경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72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599억원으로 추계됨

- 참고로, 건강보험 추가지출소요는 매년 5,141억원씩 향후 5년간 총 2조 5,705억원이 소요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서류의 송달 (안 제81조의5)	720	720	720	720	720	3,599	720

주: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므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 증가분을 제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제5항) ※ 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함 ○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제8항)	의무규정

1	안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제9항) 1.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규정
2	안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u>등기우편으로 함</u>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개정) 등기우편으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문자전송 등으로 안내할 경우 전화 또는 문자 비용(2024년 단가 기준, SMS 7.9원, LMS 26원, MMS 49.7원, 알뜰톡 3.6원)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공단은 이미 ‘징수독려 업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전화 및 문자 안내를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전체 체납자의 전화번호 수집 현황을 알기 어렵고 개정안은 안내 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안내의 의무화에 따른 대상자와 단가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¹⁾
2	안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현행법 제81조의5에 따른 서류송달 방식을 현행 일반우편에서 개정안에 따른 등기우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법 제81조의5에 따른 보험료 고지(제79조), 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문(제81조) 서류송달(이하 “서류송달”) 현황을 준용

- － 법 제81조의5에 따른 서류에는 보험료 고지(제79조), 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문(제81조)이 포함됨

[표 2] 현행법 제81조의5에 따른 서류송달 현황(2022~2024년)

(단위: 천건, 억원)

구분	계		보험료 고지		보험료 독촉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관련 안내문	
	건수	우편요금	건수	우편요금	건수	우편요금	건수	우편요금
2022	164,032	658	134,115	534	18,909	74	11,008	50
2023	168,778	666	136,472	532	19,909	78	12,397	56
2024	165,757	661	135,258	530	18,587	76	11,912	55

주 1: 우편요금 단가는 일반 430원, 등기 2,530원이나, 발송 건수에 따른 감액이 적용됨

2.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관련 안내문은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송달 방식을 등기우편으로 변경할 경우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의 증가분임

- 일반우편보다 단가가 높은 등기우편으로 변경할 경우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건강보험 총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2024년 기준 체납세대는 761만 세대이며, 예금,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등 압류 종류가 늘어날 경우 체납처분 안내가 증가할 수 있음. 참고로, 최근 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화 및 문자 징수독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전화 및 문자 징수독려 현황

(단위: 천건)

구분	2022	2023	2024
전화	884	850	992
문자	18,628	23,024	24,736

- 이때,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용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²⁾
-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³⁾,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⁴⁾⁵⁾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서류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유지에 따른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총 재정소요) 2024년 기준 서류송달 대상 건수(1억 6,576만건)에 등기우편 단가(2,530원)를 곱하여 산출하되, 등기반송에 따른 추가 송달 건수를 고려함
 - (등기 건수) 최근 3년간 서류송달 건수에 일정한 추이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2024년 기준 건수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반송 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물관리센터의 최근 3년 평균 반송률(29.6%)을

2)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3)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양출제입),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5) 2022~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 고려하여, 1차 반송 4,904만건, 2차 반송 1,452만건을 추가로 고려함
 - (우편 단가) 2024년 기준 2,530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⁶⁾

[표 3] 개정안에 따른 등기 건수

(단위: 천건)

전체 등기	최초 등기	1차 반송 (최초 등기×29.6%)	2차 반송 (1차 반송×29.6%)
229,344	165,757	49,064	14,5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4년 서류송달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공단은 전체 서류 중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관련 안내문의 일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므로 전체 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함
- 개정안에 따라 서류송달 방식을 등기우편으로 변경할 경우 건강보험 추가지출소요는 매년 5,141억원씩 향후 5년간 총 2조 5,705억원 소요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총 재정소요 (A)	5,802	5,802	5,802	5,802	5,802	29,010	5,802
현행유지 (B)	661	661	661	661	661	3,305	661
추가재정소요 (C=A-B)	5,141	5,141	5,141	5,141	5,141	25,705	5,1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무게 5~25g에 해당하는 금액임. 참고로, 우편 요금은 매년 인상되지는 않으며, 2018년 170원, 2020년 300원, 2021년 400원 인상되었음

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증가분 추계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국고지원율을 곱하여 산출
 -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양출제입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예상 지출 증가분만큼 예상 수입액이 증가하므로, 지출 증가분에 국고지원금이 연동된다고 가정
 - 국고지원율은 최근 3년(2022~2024년) 결산 상 실제 수입액의 평균인 14%를 준용
- 추계결과, 서류송달 방식 변경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72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599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720	720	720	720	720	3,599	7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